

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(제29조 관련)

1. 사용기준

- 가. 생물파괴제(Biocides)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나. 건조페인트(dry paint) 안에 총 주석함량이 2,500mg/kg을 초과하는 생물파괴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 화합물이 포함된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.

2. 적용방법

-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생물파괴제(Biocides)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포함된 방오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.
- 가. 선체 외부 또는 표면에 남아 있지 아니하게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.
 - 나. 기존의 도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려면 이미 칠하여진 페인트를 덧칠하여 외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